

# 논문집 발간 규정

- 제정 : 1985. 4. 1.     개정 : 2015. 5. 13.
- 개정 : 1987. 11. 1.    개정 : 2018. 3. 1.
- 개정 : 1993. 3. 1.     개정 : 2019. 6. 18.
- 개정 : 2011. 6. 30.    개정 : 2020. 3. 13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의 목적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수의 학문적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그 업적을 발표하기 위한 논문집의 발간 및 투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.

**제2조(주관)** 논문집의 발간은 교학처 교무과에서 주관하되, 이를 위하여 논문집편집위원회(이하 “편집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 <개정 : 2020.3.13.>

**제3조(편집위원회의 구성)** ① 편집위원회는 교학처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: 2020.3.13.>

② 편집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‘위원장’이라 한다)은 교학처장 또는 교학처장이 위촉하는 편집위원으로 한다. <개정 : 2020.3.13.>

③ 위원장은 논문집의 발간과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 및 일반직 중에서 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**제4조(편집위원회의 기능)**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.

1. 논문집의 발간에 관한 계획 수립
2. 논문편수의 결정과 배정
3. 논문의 사전심사
4. 논문의 인쇄 교정
5. 기타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

**제5조(편집위원회 회의)** 편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, 그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.

**제6조(논문의 제출기한)** ① 논문은 사전에 제출된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와 연구계획서에 의거 7월 31일까지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② 논문은 연구윤리 준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제출한다.

**제7조(투고자격)** 논문집에 투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① 본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전임교원과 교·내외 공동연구자

#### 4-2-6 논문집발간 규정

②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자격을 인정받은 겸임교원, 초빙교원 및 시간강사

**제8조(논문의 체제 및 형식)**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의 체제와 형식에 관하여는 별도의 논문투고지침으로 정한다.

**제9조(논문의 심사절차)** ① 교신저자에 비해 상위직인 해당 전공분야의 대학 교원 3인으로부터 소정의 논문 심사를 받아야 하며, 그중 1인 이상은 타 대학에 소속된 자로 하여야 한다. 만약, 상위직 교원의 심사가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동급의 교원으로부터 심사를 받을 수 있다.

② 분야별 심사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③ 분야별 편집위원은 담당 논문의 교내 심사위원들을 위촉하고, 편집위원이 심사위원도 겸직할 수 있다. 이때,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은 다른 교수에게 논문의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④ 심사위원은 논문의 체제 및 내용, 표절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심사표와 논문심사 교정내용을 작성하여 편집위원에게 제출한다.

⑤ 편집위원은 심사표와 논문심사 교정내용을 검토하여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. 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과정에서 위원장은 집필자에게 논문의 보완, 수정, 축소를 요구하거나 채택을 거부할 수 있다.

⑥ 편집위원은 관련 분야 교수 참석 하에 논문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**제10조(학술위원회) 삭제**

**제11조(게재)** ①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 편수는 학문분야별, 학과별로 안배한다.

② 논문지 게재 순서는 교양 분야를 선두로 학칙 시행세칙 제63조 4항 소정의 학과 순서에 의한다.

③ 논문은 연구실적 심사결과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심사표에 평균 우(B) 이상의 평점을 받아야 하며, 논문심사 교정 내용이 충실히 수정되어 최종 제출되어야 논문집에 게재가 가능하다.

**제12조(연구실적)** 본교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승진 또는 재임용을 위한 연구 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.

**제13조(논문제출의 제한)** ① 제출된 논문 원고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논문집에 투고하기 전에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이 공개출판물에 발표하지 않았던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논문연구계획서의 사전 제출 없이 제출된 논문은 본교 논문집에 게재할 수 없다.

③ 논문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논문변경 신청원과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연구논문 제출기한까지의 기간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한 후에는 제목을 변경할 수 없다.

④ 논문의 저자를 변경할 때에도 사전에 논문변경 신청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동일 저자가 동일 호에 게재하는 논문은 1편을 원칙으로 한다.

⑥ 저자의 연구윤리 준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서 1개라도 '아니요'가 있는 경우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.

제14조 (발간시기) 논문집은 매년 10월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5조 (규정개정) 이 규정은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개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(시행령) 본 규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령) 본 규정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종전규정의 폐지)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은 폐지한다.

## 부 칙

(시행령)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4-2-6 논문집발간 규정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